

■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0년 제정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근로자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는 정책 (의무고용률(2020년 기준): 국가·지자체·공기업 등 3.4%, 민간 3.1%)
▶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의무고용률 미달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사업주 지원 제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 등 혜택 지원

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 지급

고용시설 자금 용자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필요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구입·수리·설치 비용 용자

고용시설·장비 지원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통근용 승합차 구입, 편의시설 설계·설치·구입·수리비용, 재택근무에 필요한 작업장비 설치·구입·수리비용 지원

고용관리비용 지원 고용관리를 위한 작업지도원 선임·배치 비용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및 지원 「장애인고용법」시행규칙 제3조의 기준을 갖춘 사업장 인증(생산품 우선 구매제도 적용, 세액감면 혜택) 및 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비용 지원

장애인 지원 제도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는 취업성공패키지, 맞춤형훈련 등 각종 취업 지원

취업알선 지원 구인상담 및 현장방문, 취업 후 적응지도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선배차 후훈련 방식으로 장애인에게는 훈련준비금 등, 사업주에게는 훈련보조금 등 지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취업지원 프로그램

중증인턴제 중증장애인의 인턴 근무 기회 제공, 직무능력 향상 도모

근로지원인 지원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중 부수적인 업무를 지원 하는 근로지원인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맞춤형훈련 지원 훈련기관을 통한 직업훈련서비스 및 기업과 약정 체결을 통한 현장실무 중심의 직업훈련 지원

※ 시기에 따라 지원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참조

■ 직업영역개발 사례

- 발달장애인 '방진복 특수세정원'** 반도체 클린룸에서 사용하는 방진복을 수거, 세탁, 건조, 품질검사, 포장, 납품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
- 정신장애인 '온라인상품정보원'** 실시간으로 경쟁사 상품과 비교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는 것을 목표로 상품 이미지, 가격 등을 비교 및 검수하여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직무
- 청각장애인 '테이블 매니저'** 호텔, 레스토랑, 한정식 식당 등 외식 공간의 다양한 고급 기물을 준비하고, 테이블 세팅 기준에 맞게 배치하여 고객 만족을 높이는 서비스 직무

※ 더 많은 장애인 직업영역개발사례가 궁금하시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홈페이지(<http://edi.kead.or.kr>) ▶ EDI Report ▶ 연구자료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사례

발달장애인 호텔리어, 편의점 스태프, 청각장애인 네일 아티스트, 중증장애인 바이럴 마케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http://edu.kead.or.kr>) ▶ 자료실 ▶ 우수고용사례에서 공단에서 발간하는 장애인고용 사례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관련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 실시 가능

※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동법 제86조(과태료)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 : 1588-1519 edu.kead.or.kr

장애란 무엇일까요?

- '장애'는 진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가진 사람과 태도적, 환경적 장벽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에서 유래합니다.(사회적 모델의 관점 반영)
- 장애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으며 나라마다 장애의 범위가 다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25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에 해당합니다.
※ 2018년 12월 기준 장애인등록현황, 보건복지부
- 장애 발생 원인의 73.5%가 후천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누구도 장애인이 될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 201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일들을 장애인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해석하며 그 일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측하고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함께 동참하겠다는 심리사회적 공감(장애감수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장애 유형

-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유형은 15개로 분류됩니다.

I.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척수장애 등 몸통과 팔다리에 불편을 겪는 장애 ▶ 면접이나 회의를 준비할 때 접근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뇌병변 장애	뇌성마비, 뇌졸중, 뇌의 손상 등으로 인해 보행장애, 일상생활동작의 제한 등이 생기는 복합적인 장애 ▶ 말을 알아듣기 어려울 때는 다시 한 번 이야기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하고 함께 걸을 때는 속도에 맞춰 걸읍시다.
시각 장애	빛이 눈으로 들어와 뇌까지 전달되는 과정 중 어느 부위가 손상되어 발생하는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새로운 장소나 낯선 환경으로 안내할 때는 주변이나 관련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청각 장애	소리를 감지하여 뇌에 전달하는 경로가 손상되어 발생하는 청력장애 또는 평형기능장애 ▶ 모든 청각장애인이 수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사소통 방법이 좋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구화, 필담 등)
언어 장애	의사소통을 위해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음성으로 표현하는 과정 중 어떤 부분의 이상으로 인한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언어장애인의 대화 속도는 비장애인만큼 빠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를 할 때 얼굴, 눈을 바라보고 대화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안면 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주변의 시선이 불편하여 한여름에도 긴 상의를 입거나 모자, 장갑 등을 착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무리하게 모자나 장갑 등을 벗게 하는 행동은 삼갑니다.
신장 장애	신장 기능 이상(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를 포함) ▶ 투석이 필요한 신장장애인의 경우 투석시간, 투석장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심장 장애	일상·사회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 기능 이상 ▶ 심장에 무리가 될 수 있는 과격한 운동이나 활동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간 장애	일상·사회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 기능 이상 ▶ 업무로 인하여 과로나 수면 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기 장애	일상·사회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 건조한 환경이나 자극적인 가스,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는 작업환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루·요루장애	배변과 배뇨기능의 장애로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받아 일상·사회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 탈의가 잦은 근무환경, 공개적으로 탈의를 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해 의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뇌전증 장애	뇌신경세포가 일시적 이상을 일으켜 의식 소실, 발작 등과 같은 증상이 반복적이고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II.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경우(지능지수와 사회성 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인지적인 능력이 낮더라도 자신의 욕구를 알고 표현할 수 있으므로 지적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나이에 맞는 호칭을 사용하고 함부로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폐성 장애	일상·사회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장애 ▶ 낯선 장소, 낯선 사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불안해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예행연습이 필요합니다.
정신 장애	지속적인 조현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로 인해 감정조절·행동·사고 가능 및 능력이 제한되는 경우 ▶ 근무 중에도 자연스럽게 약을 복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줍니다. 중간 중간 짧은 휴식이 도움이 됩니다.

- 장애는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수많은 특성 중 하나입니다. 동일한 장애유형 이라고 해도 개별사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도움을 줄 때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장애인 스스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설명해 줄 것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61차 UN총회(2006.12.13.)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 여성장애인과 장애아동의 권리보호,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접근권 보장, 교육권과 건강권 및 일할 권리 등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 규정
- 우리나라는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참여와 평등권 보장
-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과

*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 이 비장애인과 같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도와주는 사람이나 장애인한테 도움이 되게 만든 기계나, 기구, 시설 등을 말한다.

- 그 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998년)을 통해 이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 장애인의 '인권', '기본적인 자유'가 침해당한다면?
 - ▶ **권리구제 신청** 피해사례 발생 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 ▶ (국가인 권위원회) 시정권고 및 법무부장관에 통보 ▶ 시정권고 불이행 시 ▶ (법무부장관) 시정명령 발동 ▶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 **고충처리위원 신고** 피해사례 발생 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 ▶ (고충 처리위원) 10일 이내 조치 및 결과 통보
- ※ 30명 이상 사업장 '고충처리위원 필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